

의안번호	2212294
의 퇴 인	송옥주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2.
추계번호	25B4666

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3항제1호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)	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. 다만,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(제3항) 1.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인 자 *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‘농업 외 종합소득금액’ 기준 변경 (현행) 3,700만원 이상 → (개정안) 직전 연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	의무규정
2	안 제14조제3항제1호(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)	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. 다만,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(제3항) 1.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인 자 *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‘농업 외 종합소득금액’ 기준 변경 (현행) 3,700만원 이상 → (개정안) 직전 연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제3항제1호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제3항제1호(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)	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에 따른 공익직접직불제도는 임업·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¹⁾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,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분
 - (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)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
 - (육림업 직접지불제도)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
 - [참고자료 1] 임업직불제 자격 요건
 - [참고자료 2] 임업직불제 및 농업직불제 비교
-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, 제외요건 완화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(현행) 3,700만원 이상
 - (개정안) 직전 연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

[표 1] 전체 가구소득 평균: 소득 기준연도 2022~2024년

(단위: 만원)

소득분위별	2023	2024	2025
	가구소득(전년도) 평균 (=2022년도 소득)	가구소득(전년도) 평균 (=2023년도 소득)	가구소득(전년도) 평균 (=2024년도 소득)
전체	6,762	7,185	7,427
전체 평균 가구소득의 65%	4,395	4,670	4,827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, 2025.12. 공표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"임업인등"이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.

- 그러나 향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이면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% 미만에 해당하는 임업인의 수, 해당 임업인의 직접 지불금 신청 여부, 해당 임업인이 보유한 산지 면적 및 임산물 품목 등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다만, 산림청은 2024년을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변경에 따라 6억 4,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([참고자료 3] 참고)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임업직불제 자격 요건

(자료: 산림청)

임산물생산업	육림업
■ 지급대상 산지 - '19.4.1.~'22.9.30. 임업경영체(임산물생산업) 등록 산지 * (지급 상한) 임업인: 30ha, 법인: 50ha	■ 지급대상 산지 - '19.4.1.~'22.9.30. 임업경영체(육림업) 등록 산지 * (지급 상한) 임업인: 30ha, 법인: 50ha
■ 소규모임가 - 임가 대상면적의 합 0.1~0.5ha 이하 -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보유산지의 합 1.55ha 미만 - 임가 대상자 모두 농촌거주, 영농종사 직전 계속 3년 이상 - 임가 구성원 각각 농외소득 2천만원 미만 - 임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이 4,500만원 미만 -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시설재배업 소득 3,800만원 미만 - 법인 및 소농직불금, 농업면적직불금 지급받은 자 및 구성원 제외 ■ 면적 - 소규모임가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지급등록 직전 1년 이상(연 60일 이상) 대상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자로서, (임업인) 0.1ha 이상이면서 연 120만원 판매액 (법인) 5ha 이상이면서 연 4,500만원 이상 판매액	■ 육림업 - 3~30ha(법인 10~50ha) -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* 등록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·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

□ 지급제외

	임산물생산업	육림업
산지	■ 국유림 및 공유림 ■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(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) ■ 주거·상업·공업지역, 산업단지, 농공단지, 택지개발지구, 개발사업 예정지 ■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■ 휴경산지(임산물 재배 휴경,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) ■ 농촌지역외 거주자(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) ■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(임산물생산업 한정) ■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(육림업 한정)	
대상자	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* 이상인 자 * '07년 전국가구평균소득 3,674만원('08년에 '06년 수급자 중 공무원 등 부정수급 사회문제) ■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, 구성원 (신청일의 직전연도에 한함) ■ 농업 면적직불금 면적과의 합 상한 적용 ■ 무단점유자 (임차가능, 시행 후 분할 임차 불가)	■ 산지 소재 농촌 외 거주자(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) ■ 임야 소유자가 아닌 자(소유자는 아니나 임목을 등기한 경우는 가능, 임차불가)

[참고자료 2] 임업직불제 및 농업직불제 비교

(자료: 산림청)

□ 구성 및 공통요건

구분	임업	농업	비고
구성	<임산물생산업> ①소규모임가 (규모) 0.1~0.5ha (단가) 130만원/가구 ②면적 (면적) 0.1~30ha(법인 50ha) (단가) 94~70만원/ha	<기본형> ①소규모농가 (규모) 0.1~0.5ha (단가) 130만원/가구 ②면적 (면적) 0.1~30ha(법인 50ha, 공동농업경영체 400ha) (단가) 205~100만원/ha	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은 생산물과 경작형태가 유사하여 농민, 임업인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급방식 준용 *면적직불금 단가는 임야의 생산성(밭의 70%)을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% 적용
	<육림업> ③임업경영체+10년 내 조림·육림 실행 (면적) 3~30ha(법인 50ha) (단가) 62~32만원 * (공통) 60ha 한도	<선택형> ③친환경농업(35~140만원/ha) ④친환경안전축산물 (3천만원 한도) ⑤경관보전(45~170만원/ha) ⑥전략작물(200만원/ha) ⑦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	
공통요건	①(경영체) 등록必 ②(거주) 산지 소재 시·군(연접 포함) 농촌 * 주업요건 ③(종사기간) 직전 1년 이상 ④(종사일) 연 60일 이상 ⑤(규모) 경영면적 0.1ha 이상,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⑥(소득)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	①(경영체) 등록必 ②(거주) 농촌 * 주업요건 ③(종사기간) 직전 3년 중 1년 이상 ④(종사일) - ⑤(규모) 경영면적 0.1ha 이상 또는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⑥(소득)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미만	

□ 농업과 주요요건 비교

임업(임산물생산)	농업(면적)
다음 어느 하나 충족	다음 어느 하나 충족
① 임업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·군(연접 시·군 포함)에 소재하는 3ha 이상 산지 경영 임업인	① 같은 시·군·구(연접 시·군·구 포함)에 소재하는 1ha 이상 농지 경작 농업인 * 농업인의 주소지 제한 없음
②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,600만원 이상 임업인 * 지역 제한 없음	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농업인 * 지역 제한 없음
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임업인 * 지역 제한 없음	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·구에 두고 동일 지역(연접 읍·면·동 포함)에 소재한 0.1ha 이상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

□ 지급대상 산지·농지 요건

임 업	농 업
< 임산물생산업 > o 임산물생산업 이용 산지로서 '19.4.1.~'22.9.30.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< 욕립업 > o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고 욕립업 이용 산지로서 '19.4.1.~'22.9.30.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	< 논농업 > o '98.1.1.~'00.12.31. 논농업 이용 농지 * '97년 이전 경지정리사업,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농업중단 경우도 인정 < 밭농업 > o '12.1.1.~'14.12.31. 밭농업 이용 농지 * '11년 이전 경지정리사업,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농업중단 경우도 인정 < 농업 > o '03.1.1.~'05.12.31. 농업 이용 농지로 종전 조건불리지역 농지

□ 지급대상자 요건

임 업	농 업
< 임산물생산업 종사 임업인 > 등록신청 ①직전 1년 이상 계속 ②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며, ③경영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고, ④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	< 농업인 > 1.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.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. 등록신청 ①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②농지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인

[참고자료 3]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 소요

(산림청 제출자료)

o 기초자료

- '22.9.30.까지 경영체 등록 면적 : 134,793ha(44,442개 경영체)
 - * 임산물생산업 : 79,288ha(41,157건), 육림업 : 55,505ha(5,131건)
- 임업경영체 중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 초과(3,700~4,670만원)로 미지급 대상면적 : 1,933ha(658건)
 - ① 임산물생산업 지급 대상자 : 768ha(537건)
 - ② 육림업 지급 대상자 : 855ha(84건)
 - ③ 겸업(임산물생산업+육림업) 지급 대상자 : 310ha(37건)
 - ▷ 임산물생산업 : 85ha, 육림업 : 225ha
- '24년 직불금 신청률 : (임산물생산업) 66.6%, (육림업) 34.7%
- '24년 직불금 등록률 : (임산물생산업) 93.5%, (육림업) 84.7%
- 지급 평균 단가 : 임산물생산업 860천원, 육림업 58만원
 - ① 임산물생산업 ha당 단가 : 860천원
 - ▷ (1구간 분포율 53.3% × 94만원) + (2구간 분포율 26.9% × 82만원) + (3구간 분포율 19.8% × 70만원) = 86.02만원 ∴ 860천원
 - ② 육림업 ha당 단가 : 580천원
 - ▷ (1구간 분포율 75.2% × 62만원) + (2구간 분포율 20.5% × 47만원) + (3구간 분포율 4.3% × 32만원) = 57.64만원 ∴ 580천원

o 소요금액 : ① + ② = 641백만원

① 임산물생산업 : 457백만원

- ▷ 853ha(대상면적) x 66.6%(신청률) x 93.5%(등록률) x 860천원(단가)
= 457백만원

② 육림업 : 184백만원

- ▷ 1,080ha(대상면적) x 34.7%(신청률) x 84.7%(등록률) x 580천원(단가)
= 184백만원